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되어 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 및 대규모 행사 범위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전문성 및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액의 상환의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6조)

- 1) 민간 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권 및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논의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시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함
- 2) 응급의료 정책의 기획·조정·평가 및 현안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함

나. 대지급금 분할납부기간 확대(안 제21조)

상환의무자의 대지급금 미상환액이 고액이고 현실적 납부 어려움

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12월 범위를 초과하여 분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액의 상환의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다. 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 신설(제26조의4)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되어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에 대한 응급구조사 응시제한 기준을 신설함

라. 대규모 행사의 범위 신설(제27조의3)

법률에서 위임된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로 하는 대규모 행사의 범위를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
3)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 중 “12월”을 “24월”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 신청한 상환의무자의 예금 총 잔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24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를 제26조의5로 하고, 제26조의4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다음, 각 호의 행사 중 순간 최대 참석자 및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
2. 지역축제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는 공연·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등

제26조의4 관련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응급의료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1. 0. 00>

응급구조사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4 관련)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 받는 행위 10. 법제37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11.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를 위한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2회
12.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3.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4.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비고: 위 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유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 <u>다만,</u> <u>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⑤~⑦ (생략)	⑤~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u>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u>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u>위원회의</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 <u>제8항까지에서</u> ----- ----- <u>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u> ----- ----- -----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 ----- -----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	-----
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	----- . -----
무자의 신청에 따라 <u>12월의</u> 범위	----- <u>24월의</u> -----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
있다.	--- <u>다만, 납부 신청한 상환의무</u>
	<u>자의 예금 총 잔액이 민사집행법</u>
	<u>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금액 이하</u>
	<u>인 경우 24월의 범위를 초과하여</u>
	<u>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 응시</u>
	<u>제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u>
	<u>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u>
	<u>별표 3과 같다.</u>
	<u>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u>
	<u>가 있는 공동주택 등)</u>
	①~② (생략)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	
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② (생략)	

<신 설>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다음 각 호의 행사 중 순간 최대 참석자 및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 의 국제행사
	2. 지역축제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는 공 연·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58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